

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정이유

-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운영과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(안 제2장)
- 나.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(안 제15조)

□ 검토의견

-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)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2)각종 문화예술관련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임.
- 동 제정조례안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임.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지방자치법

제 133조 (재산및기금의설치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나.내용 타당성

동 조례안에 의하면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재원의 경우 조례안의 규정이나 타 기금 운영상황을 보면 대부분 시 자체 출연금이 될 것으로 생각됨.

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

제 15조 (기금의조성) ①제14조 규정에 의한 기금 총액은 30억원으로 한다
②제14조 제1호의 규정중 파주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한다.

현 파주시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기금 목표액인 30억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시 출연금의 확보 방안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